

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및 면제(비대상) 서류 제출 안내

I | 제출 개요

-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(**개발행위 허가 대상, II-① 참고**)
 - 다만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(**개발행위 허가 비대상(면제), II-② 참고**)
-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,
 -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,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
- *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(산업부 고시) 제8조, 제8조의2

II |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
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(**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**)

- (제출서류) 개발행위와 관련한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
 - ① 개발행위 준공검사 알림 공문 1부.
 - ②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부.
 - ③ 개발행위 (변경) 허가서 및 공문 1부. (개발행위 “최초” 허가서 포함)
 - ④ 개발행위 기타파일 (별도 증빙 필요 시 추가 제출)
- (유의사항)
 - ☞ ①RPS 대상설비와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간 정보(신청자(대표자), 지번 등)가 상이하거나, ②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상 정보가 불명확(의 0인, 0필지 등)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*를 추가 제출 (‘④ 개발행위 기타파일’에 첨부)
 - * (신청자 관련) 양도양수 관련 서류, 신청자 연명부 등 (지번 관련) 토지대장, 분할·등록전환측량 성과도 등
- ☞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가림처리하여 제출

② 개발행위 면제 확인서류 제출 (개발행위 허가 비대상(면제)인 경우)

- (제출서류) ①국민신문고 답변서, ②지자체 알림 공문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
 - 발전소명, 발전소 주소, 면제 사유, 지자체 담당자 정보(이름, 연락처 등) 포함 필수
- (유의사항)
 - ☞ 지자체 소관과 담당자의 유권해석이 들어간 '최종 판단'을 명확하게 받으셔야 합니다. '최종 판단'이라 함에 있어 ①단순 법령 열거, ②조건부 판단 등의 답변은 적합 처리가 불가합니다.
 - ☞ 아울러,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분들이 해당 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비 기초자료(도면 등)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③ 공작물 축조신고(건축법) 관련 - '공작물축조신고필증' (붙임 참고)

- 「국토계획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의거 「건축법」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작물은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, 동 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함
 - '공작물축조신고필증' 제출 시 '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'을 제출한 것으로 봄

III | 제출 방법

- "RPS 종합지원시스템 준공검사필증 및 개발행위 면제 공문 제출 매뉴얼" 참고

※ 본 자료는 RPS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안내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RPS사업실(☎1855-3020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<p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</p>	<p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447호, 2022. 2. 17., 타법개정]</p>	<p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099호, 2022. 1. 21., 타법개정]</p>
<p>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(이하 “개발행위”라 한다)를 하려는 자는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(이하 “개발행위허가”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1.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</p> <p>2. 토지의 형질 변경(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)</p> <p>3. 토석의 채취</p> <p>4. 토지 분할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)</p> <p>5. 녹지지역·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</p> <p>1.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</p> <p>2. 「건축법」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·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(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)</p> <p>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</p>	<p>제51조(개발행위허가의 대상)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건축물의 건축 :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</p> <p>2. 공작물의 설치 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)의 설치 (생략)</p> <p>제53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(생략)</p> <p>2. 공작물의 설치</p> <p>가.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,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,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제외한다.</p> <p>나. 도시지역·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,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,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제외한다. (생략)</p>	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447호, 2022. 2. 17., 타법개정]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099호, 2022. 1. 21., 타법개정]
제57조(개발행위허가의 절차)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, 위해(危害) 방지, 환경오염 방지, 경관,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생략) 다만,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「건축법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「건축법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		제9조(개발행위허가신청서)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62조(준공검사)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제11조(준공검사) ① 공작물의 설치(「건축법」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),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건축법 [법률 제18825호, 2022. 2. 3., 일부개정]	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411호, 2022. 2. 11., 타법개정]	건축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107호, 2022. 2. 11., 타법개정]
제83조(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)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, 굴 뚝, 광고탑, 고가수조(高架水槽), 지 하 대피호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작물을 축조</u>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<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118조(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)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을 축조(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 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할 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(생략) 11. 높이 5미터를 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 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	제41조(공작물축조신고)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 작물의 축조신고 를 하려는 자는 별 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 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 의 제출을 생략한다.